

UCC 관련 미국 판결 검토

I. 검토배경

- UCC(User Created Contents)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하였던 개인들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자아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여
 - UCC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가 구글에 의하여 16억 5천만달러라는 거액에 매각되고 국내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tv가 급성장하면서 UCC비즈니스모델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음
- 그러나, '08년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UCC사이트의 페이지뷰가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
 - 이는 UCC가 저작권침해의 주범이라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
-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'공정한 이용(Fair Use)'를 이유로 UCC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배경과 판결이유를 살펴보고자 함

II. UCC의 저작권 침해

-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들은 저작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
 - 저작권자의 이익 취득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막기 위한 권리임
- 이러한 저작권 체계는 디지털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저작권자와 미디어의 경쟁을 피하고 시장에 의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응당의 보상을 보장해 주었음

- 그러나, UCC로 불리는 새로운 문화자산의 등장으로 기존 생산, 유통, 분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창출, 유통되게 되었으며,
 - 기존의 저작권보호체계가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 생산에 의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가치분배시스템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통제를 벗어나게 됨
-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UCC에 대해 강한 법적 제동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, 이는 UCC의 창작, 유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UCC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함

III. UCC 저작권에 대한 최근 미국판결

- 최근 미국법원은 저작권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고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까지 제한하는 저작권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림
- '07년 6월 펜실베니아에 사는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춤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례에서
 - 동영상 가운데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프린스 음악의 저작권자인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UCC삭제를 요청하였는데,
 - 유니버설 뮤직은 이외에 200명에게도 유사한 경고장을 보내고 사이트 관리자인 유튜브에 비디오 삭제를 요구하였음
- 그런데,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MCA)에 명시된 '공정이용'을 이유로 주부의 손을 들어주면서,
 - 저작권자들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삭제를 주장하기 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

IV. 결론

-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법과 달리 일반적 저작권제한사유로서 ‘공정이용’을 인정하지 않고,
 -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개의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
 - UCC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론을 우리 나라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-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UCC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제25조의 저작물 인용인데,
 - 학계 다수 견해는 피인용저작물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가지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
 - 수정이나 개작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동영상 UCC의 경우에는 인용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회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
- 그러나, UCC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저작권 적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미국 법원의 입장이나 UCC를 통한 자아표현 및 가치창출을 희망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면,
 -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의 ‘정당한 범위 내’와 ‘공정한 관행에의 합치’의 두 요건을 UCC에 대하여서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해석론이 수립되어야 하고,
 - 저작권법 개정시 DMCA와 유사한 ‘공정이용’조항을 둬으로써 UCC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권리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할 수 있는 콘텐츠 등장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